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91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의자 : 김형동 · 안철수 · 우재준

김위상 · 김상훈 · 이인선

김소희 · 김석기 · 박형수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